

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9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18.

제 출 자 : 지역경제과장

1. 개정사유

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 골자

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강화(안 제12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2항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

나. 경상남도 주택58550-11405('02.9.17)건축물 부설주차장 확보대책 강구

다. 입법예고 : 결과 의견내용 없음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(개정부분은 굵은 문체로 표기)

고성군조례 제 호

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

고성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[별표 5]

부설주차장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(제12조 관련)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위락시설	시설면적100㎡당 1대
2.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다) 및 영업시설,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),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업무시설,공공용시설중 방송국	시설면적150㎡당 1대 다만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의 경우는 75㎡당 1대
3.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.)제2종근린생활시설,숙박시설	시설면적150㎡당 1대 다만 숙박시설은 100㎡당 1대
4.단독주택	시설면적130㎡초과200㎡이하의 경우에는1대,시설면적200㎡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㎡를 초과하는 130㎡당 1대를 더한 대수, 다만 다가구주택은 전 주차대수가 가구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가구당 1대 이상
5.공동주택,다세대주택	시설면적이 90㎡당 1대, 다만 전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될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
6.골프장,골프연습장,옥외수영장,관람장	골프장 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
7.기타건축물	시설면적200㎡당 1대

[참고자료]

부설주차장설치대상물 및 설치기준(현행)

시 설 물	설 치 기 준
1.위락시설	시설면적100㎡당 1대
2.문화 및 집회시설(관람장을 제외한 다) 및 영업시설,의료시설(정신병원·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),운동시설(골프장·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),업무시설, 공공용시설중 방송국	시설면적150㎡당 1대
3.제1종 근린생활시설(건축법시행령 별표1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 한다.)제2종근린생활시설,숙박시설	시설면적200㎡당 1대
4.단독주택,다세대주택	시설면적130㎡초과200㎡이하의 경우에는1대,시설면적200㎡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㎡를 초과하는 130㎡ 당 1대를 더한 대수
5.공동주택(다세대주택·기숙사를 제외한다)	시설면적120㎡당 1대
6.골프장,골프연습장,옥외수영장,관람장	골프장 1홀당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
7.기타건축물	시설면적300㎡당 1대